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시 산하 공공 체육시설 내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경감하여 합리적인 요금체제로 개선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토록 근거를 신설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4항의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u>범위 내에서</u>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퍼센트 <u>범위 내에서</u> 감면할 수 있다. 2.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u>범위 내에서</u>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범위에서</u> ----- 1. ----- ----- <u>범위에서</u> ----- ----- 2. (현행과 같음) ④ ----- ----- <u>범위에서</u> ----- 1. ~ 2. (현행과 같음) ⑤ <u>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u>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2조(여성복지 증진)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